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Analysis of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윤 희 윤(Hee-Yoon Yoon)*

〈목 차〉

Ⅰ. 서론
Ⅱ. 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목적과 유형
 1. 공동보존서고의 함의와 기능
 2. 공동보존서고의 목적과 기대효과
 3. 공동보존서고의 유형과 특징
Ⅲ.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
 1. 관계법령의 법리적 타당성 분석
 2. 국가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3. 도서관계의 인식적 타당성 분석
 4. 수장공간의 실증적 타당성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관계법령, 국가정책, 도서관계의 인식도, 실제 수장공간의 측면에서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모형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시도는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키워드: 공동보존서고, 공동보존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타당성 분석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To that end, its feasibilities were analyzed from the sides of the relevant laws, national policy, library's recognition, and actual collection space. As a result, the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was revealed by enough. Accordingly, based on the this basic research, there is a need to develop immediatel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model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must grant priority of cultural policy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Keywords: Collaborative repository, Collaborative repository library, Regional central library, Public library, Feasibility analysis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접수일: 2013년 4월 30일 • 최초심사일: 2013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13년 6월 27일

www.kci.go.kr

Ⅰ. 서 론

어느 국가나 사회를 불문하고 도서관이 다른 사회문화기관(박물관, 미술관, 문화센터 등)과 구별되는 결정적 이유는 자료중심의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료보존은 도서관의 배타적 정체성을 공증할 뿐만 아니라 당대 및 후대의 접근이용을 보장하는 요체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6년에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은 특히 공공도서관 장서의 통합적 보존관리 책임을 광역자치단체에 부과하였다. 최종 개정일이 2012년 2월 17일인 현행 「도서관법」(법률 제11310호) 제22조 제1항은 '시·도로 하여금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또는 설립·운영'을,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시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리고 법률 제23조 제1호는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을, 제4호는 '지역의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을 지역대표도서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도별 지역대표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장서를 공동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한 배경은 해방 이후에 설립된 대다수 공공도서관이 지난 60년간 물량위주의 장서확충과 자체 보존관리에 치중한 결과, 저마다 공간부족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지역대표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하여 해결하도록 유인하는데 있다. 실제로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정책세미나, 2007년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2008년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등에서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2008년 8월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법정계획으로 발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정책과제 가운데 '지역의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의 추진전략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의 통합자료보존관 건립 추진'을 명시하였다. 요컨대 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적 역할과 업무,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해결의 현실적 시급성, 범국가적 중장기 정책문서에서의 추진의지 등을 연계하면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운영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이 주도하는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부언하면 법리적, 정책적, 인식적, 현실적 측면에서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후속 연구과제인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모형(기본방향, 주요 기능과 업무, 건립시기와 우선순위, 입지조건과 건축규모, 이관자료 기준과 우선순위, 소유권과 운영관리시스템, 보존장서 구축과 정보서비스, 조직체계와 인력구성, 운영관리규정)에 논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www.kci.go.kr

Ⅱ. 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목적과 유형

1. 공동보존서고의 함의와 기능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에서 공동보존서고를 단편적으로 논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용어는 상당히 다양하고 혼란스럽다. 이들을 발췌하면 공동보존관, 공동보존서고, 공동보존센터, 합동자료보존소, 공동협력보존소, 자료공동보존소, 지역공동보존소, 지역공동도서관, 보존도서관 등이다. 그러나 키워드별로 정리하면 공동(협력, 합동)과 보존관(소, 서고, 센터, 도서관)로 양분할 수 있으며, 전자에 무게중심이 있다.

이들의 사전적 함의와 차이를 살펴보면 공동(collaboration)은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같은 조건 및 자격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협동(cooperation)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합동이 아니고 내부의 협약에 의한 연합'이며, 합동(combination or union)은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되어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복수의 도서관이 수장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협력·보존하는 시스템은 '공(협)동 + 보존 + 서고(도서관, 센터, 소)'로 간주할 수 있다. 그것이 지역단위로 형성될 때는 지역공동보존관으로, 국가도서관 등 특정 도서관으로 집중될 때는 보존도서관(deposit library)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공동보존서고는 공동보존관(센터)의 하위 개념이며, 그것이 폐가형 보존서고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공동보존서고 = 공동보존도서관'으로 규정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공동보존서고(collaborative repository)는 '지역적 또는 관종별 제한여부를 불문하고 복수의 도서관이 수장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할 의도로 상호협력하여 보존서고를 건립·운영하면서 서비스 기능도 수행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보존서고는 협약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과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하는 기능은 보존 및 복원이다. 공동보존서고는 협력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도서관이 이관하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되, 이관할 때 이미 파오손되었거나 이관·보존과정에서 발생하는 훼손자료는 수선, 탈산처리, 매체변환 등을 통하여 복원한다.

둘째, 폐기·제적과 재활용도 공동보존서고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 복수의 도서관이 이관한 자료 가운데 다수의 복본이 존재할 경우에 보존상태가 양호한 최소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폐기처분하거나 다른 도서관에 기증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셋째, 공동보존서고의 핵심기능은 자료의 이관과 보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이용 및 원격상호대차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넷째, 공동보존서고에 수장된 자료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이관한 도서관에 있다. 즉, 자료를 관

www.kci.go.kr

리전환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은 자료를 이관한 각각의 도서관에 귀속된다. 그러나 이관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섯째, 공동보존서고의 인력과 조직, 운영과 서비스, 시설관리, 예산부담, 자료폐기 등은 공동보존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간의 협정이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공동보존서고의 의사결정은 일종의 합의제 방식을 취한다.

여섯째,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는 주체는 자료보존과 서비스에 따른 각종 기준, 즉 자료이관, 제적과 폐기, 대출열람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비 및 수선복원비의 부담 등을 규정화해야 한다.

2. 공동보존서고의 목적과 기대효과

모든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핵심기능은 장서개발, 자료조직, 정보서비스, 보존관리로 압축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서개발과 보존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대다수 도서관은 장서개발에 못지않게 보존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 방대한 보존서고를 확보하여 자국의 지식문화유산을 영구히 보존하는데 주력하는 국가도서관을 제외한 대다수 도서관은 연평균 5% 이상의 장서증가에 따른 공간부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증축하거나 대대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한 공동보존 등의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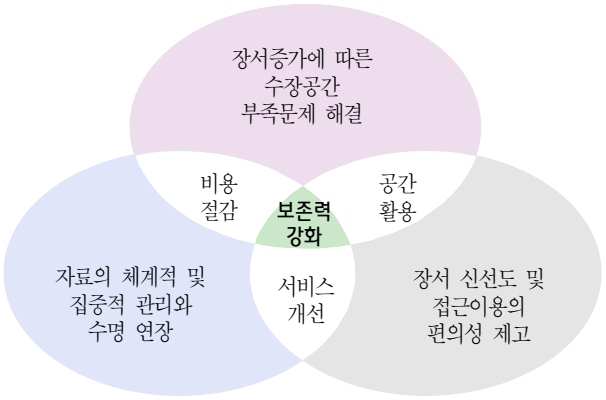

〈그림 1〉 공동보존서고 건립 · 운영의 주요 목적

여러 국내외 관련연구나 실제 운영사례에서 드러난 공동보존서고의 주요 목적은 〈그림 1〉처럼 자체 서고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서의 신신도를 높여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며,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자료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그림 2〉처럼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책무의 관점에서 자료보존은 당대 이용서비스 뿐만 아니라 후대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타임캡슐이다.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여 당대 요구를 충족시키더라도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후대를 위한 지식문화기반시설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둘째, 정체성 강화의 측면에서 자료보존은 다른 지식정보기관이나 문화시설보다 비교우위의 존재감을 확보·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별도서관 입장에서 수장공간이 부족할

www.kci.go.kr

경우에 저마다 증축하거나 보존서고를 신축하는 것보다 공동보존서고를 건립·운영하는 것이 유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셋째,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는 내재적 정보가치가 거의 없거나 이용도가 극히 낮은 자료를 공동서고로 이관·보존할 경우에 파생되는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공간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마다 추가로 수장공간을 확보하는데 투입해야 하는 건축 및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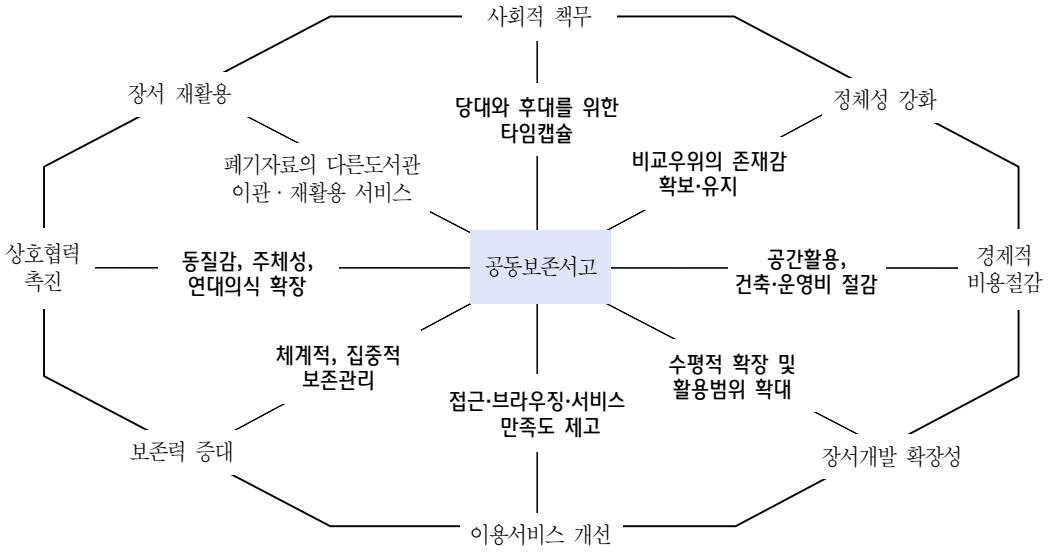

〈그림 2〉 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 운영의 기대효과

넷째, 장서개발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여러 도서관이 각각 이관한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관리운영 및 서비스 기능을 공유할 경우에 자체 소장여부를 불문하고 장서의 수평적 확장 및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이용서비스 개선의 측면에서도 이용도가 낮은 자료와 복본을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경우에 기존의 수장공간에 배가된 장서의 최신성이 높아져 이용자의 접근 및 브라우징 기능이 제고되고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자료서비스 만족도 및 도서관 인식도 제고로 이어진다.

여섯째, 보존력 증대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별도서관이 자체 수장할 때보다 공동보존할 경우에 인위적, 물리적, 화학적 손상과 훼손에 따른 수선·복원, 탈산처리 등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자료의 수명이 연장된다.

일곱째, 상호협력 및 자원공유 촉진의 측면에서는 자료보존이 다른 어떤 협력메뉴보다 도서관 및 사서직의 동질감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연대의식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활

www.kci.go.kr

동도 촉진하는 후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덟째, 자료 재활용(recycle) 측면에서는 여러 도서관이 공동보존에 참여하여 각각 이용도가 낮은 자료를 이관할 경우에 공동보존서고를 운영·관리하는 입장에서 중복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최소 보존부수를 결정한 다음에 폐기절차를 거쳐 미소장 도서관에 기증함으로써 재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에 신지연 등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 건립되었거나 지정·운영되는 4개관(한밭도서관, 시민도서관, 미추홀도서관, 한라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공동보존의 기대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표 1〉처럼 과반수 이상이 '소장공간 부족문제 해결, 자료 관리업무 감소, 예산절감, 이관 후 나머지 자료이용률 향상, 공동보존 자료의 활용확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1)]

〈표 1〉 도서관 공동보존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소장공간 부족문제 해결	0	0	6(9.2%)	35(53.8%)	24(36.9%)
자료관리 업무 감소		9(13.8%)	15(23.1%)	33(50.8%)	8(12.3%)
예산절감	11(1.5%)	8(12.3%)	30(46.2%)	30(46.2%)	7(10.8%)
이관 후 나머지 자료이용률 향상	11(1.5%)	7(10.8%)	17(26.2%)	32(49.2%)	8(12.3%)
공동보존 자료의 활용확대	11(1.5%)	6(9.2%)	13(20%)	31(47.7%)	14(21.5%)

3. 공동보존서고의 유형과 특징

1940년대부터 외국 도서관계는 공동보존서고를 건립·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초창기는 대개 자원공유보다 공동보존에 치중하다가 점차 단순한 공동서고 차원을 넘어 다양한 협력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지역단위 또는 이종간 공동보존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완전집중형

주로 북유럽 도시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완전집중형은 대개 납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도서관이 보존관을 건립하여 자체장서를 보존하는 동시에 다른 관종의 자료를 이관받아 집중적으로 보존·운영하는 형태이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는 노르웨이 국립보존관(Norway National Repository Library)과 핀란드 국립보존관(Finnish National Repository Library)을 들 수 있다. 특히 1938년 3월 1일자로 자국의 모든 도서관 자료를 경제적으로 보존관리할 목적으로

1) 신지연, 김유승,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3호(2011), p.143.

www.kci.go.kr

건립된 FNRL은 세계 최초의 범국가적 공동보존관으로서 다른 도서관(대학, 공공, 특수도서관 등)이 이관하는 자료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상호대차 등을 중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2)]

2) 협력보존형

이 유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여러 지역 또는 특정 지역에 공동보존관을 건립하고 각각의 운영주체를 정하여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자를 대표하는 사례로는 캘리포니아주 SRLF(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를 들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대학의 5개 캠퍼스(로스엔젤레스, 샌디에고, 어빙, 리버사이드, 산타 바바라)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1987년에 완공된 제1단계 서고에는 350만책을 수용할 수 있으며, 1996년에 종료된 제2단계 증축서고도 350만책을 수장할 수 있다. 후자는 미네소타주의 MLAC(The Minnesota Library Access Center), 호주의 CARM(Caval for Archival and Research Material) 등이 대표적이다.[3)]

3) 조합출자형

조합출자형은 여러 도서관이 조합을 구성하여 각각 일정액을 출자하여 서고를 구입 또는 임대하고 자료를 공동보존하는 형태이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는 1942년 3월 2일에 7개 기관(하버드 대학도서관, 보스톤 대학도서관, 매샤츄세츠주립도서관 등)이 출자하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하버드대학(보스톤의 Allston area)에 개관한 NEDL(New England Depository Library)을 들 수 있다. 최초의 조합형 공동보존관으로 간주되는 NEDL 장서는 도서관별로 구분하고 시설의 소유권은 각 도서관에 있는 반면에 운영은 NELINET가 맡고 있으며, 700여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유형과 달리 보존하는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참여도서관이 각각 사용한 만큼의 유지비 및 기타 경비를 지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4)]

4) 지역거점형

이 유형은 여러 참여주체가 지역거점형 단일 또는 복수 건물을 확보하여 공동보존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10개 대학도서관(시카고대, 일리노이공대, 일리노이대, 아이오와주립대, 인디아나대, 캔사스대, 미시간주립대, 미네소타대, 노스웨스턴대, 푸르드대)이 1949

---

2) Johan Henden, "The Norwegian Repository Library," *Library Management*, Vol.26, No.1/2(2005), pp.73-78. Bernard F. Reilly, Jr. *Developing Print Repositories : Models for Shared Preservation and Access*(Washington, D.C. :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2003), p.32. 〈http://www.varastokirjasto.fi/lang__en/〉 [cited 2013. 2. 10].

3) UC 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2011/2012 Annual Report* 〈http://www.srlf.ucla.edu/AnnualRpt/SRLFannualRpt20112012.pdf〉 ; http://www.srlf.ucla.edu/ ; http://www.minitex.umn.edu/storage/ [cited 2012. 10. 12].

4) Francis X. Doherty, "The New England Deposit Library: History and Development," *Library Quarterly*, Vol.18, No.4(Oct. 1948), pp.245-254 ; 〈http://www.clir.org/pubs/reports/pub97/bodya.html〉 [cited 2012. 10. 10].

www.kci.go.kr

년 3월에 재단을 설립하여 시카고대학으로부터 부지를 10만 달러에 구입하고 약 100만달러(카네기 재단 75만달러 + 록펠러 재단 25만달러)의 건축비를 지원받아 1951년에 건립한 공동보존서고인 MILC(Midwest Inter-Library Center)를 들 수 있다. MILC의 보존서고는 밀집서가(300만권 수용)와 신문서고(2만권 수용)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5년에 CRL(Center for Research Libraries)로 개칭하여 공동보존도서관으로 발전하였다. MILC는 대출 및 참고정보서비스 외에 참여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 가운데 이용도는 낮으나 연구가치가 있는 자료를 개발하여 독자적인 장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NEDL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1994년 3월에 개관한 NEOMED(Northeast Ohio Medical University) 소재 NORCD(The Northeastern Ohio Regional Cooperative Depository)를 들 수 있는데, 축적된 자료는 공유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간만 대여하는 방식이다. 총 5개 보존모듈로 구성된 NORCD의 고축적 수장공간은 1,004㎡이고 서가길이로는 25.7㎞에 달한다.[5)]

이상에서 살펴본 공동보존서고 유형 가운데 국가도서관 주도의 완전집중형은 공동보존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정 업무를 감안할 때 국내에 적용하는데 부적합하고, 조합출자형은 공동보존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자원공유를 통한 서비스 기능을 배제하고 있어 역시 한계가 있다. 또한 협력보존형 중에서도 복수지역 분산배치는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운영과 거리가 있다. 반면에 지역거점형은 참여도서관의 동종 또는 이종을 불문하고 지역단위로 지역대표도서관이 주도함으로써 공동보존과 자원공유를 추구할 수 있어 국내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Ⅲ.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

지역단위로 공동보존서고가 건립되려면 그것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의 타당성 분석은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해야 할 당위성과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관계법령, 국가정책, 도서관계 인식도, 실제 수장공간으로 대별하여 타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의 법리적 타당성 분석

모든 공공사업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마찬가지로 지역대표도서관이 주도해야 할 지

5)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History of CRL," 〈http://www.crl.edu/about/history〉 ; NEOMED, "Northeastern Ohio Cooperative Regional Library Depository," 〈http://www.neomed.edu/library/northeastern-ohio-cooperative-regional-library-depository〉 [cited 2013. 3. 2].

www.kci.go.kr

역단위 공동보존서고가 건립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도서관법」 및 자치조례에서 법리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도서관법」 제22조 제1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 운영되는 지역대표도서관은 법률 제23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역대표도서관장은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5가지 업무를 매년 1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발췌한 〈표 2〉에서 전자는 제4호(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가, 후자는 제3호(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가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표 2〉 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정 업무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근거

지역대표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도서관법 제23조)	지역대표도서관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업무 (도서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1.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4.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

다음으로 「도서관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7년 4월 제주우당도서관을 시작으로 총 9개관[6]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 또는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치조례이며, 총 13개 광역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 관련조례를 제정·적용하고 있다. 각각의 조례에서 공동보존서고와 관련된 조항을 발췌하면 〈표 3〉과 같다.

6) 9개관은 제주우당도서관(2007년 4월 지정, 2008월 11월 제주한라도서관으로 변경), 대전한밭도서관(2007년 9월),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인천시립도서관(2008년 4월 지정, 2009년 6월 인천미추홀도서관으로 명칭변경), 부산시립시민도서관(2008년 4월), 전북도청도서관(2010년 11월), 광주광역시립도서관(2010년 12월),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2011년 3월), 전남도립도서관(2011년 10월), 경기도 파주교하도서관(2012년 1월)을 말한다.

www.kci.go.kr

〈표 3〉 지역대표도서관 관련조례의 공동보존서고 조항 분석

조례명칭	조항	대표도서관 소관업무	공동보존서고와의 관련성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설치 등에 관한 조례 (2007. 6. 30)	제6조	1. 법제23조와 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의 업무 2.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4.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2007. 8. 6)	제14조	1. 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내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정책개발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7. 12. 14)	제44조	1.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지원 정책의 수립 · 조정 3. 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및 공증에의 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2008. 3. 5)	제7조	1. 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무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2012. 7. 11)	제8조 제2항	법 제23조 각호에서 정하는 대표도서관의 업무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2008. 11. 13)	제6조	1.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 보존	■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조례(2009. 3. 10)	제4조	1.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표도서관 업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09. 4. 3)	제6조	1. 법 제23조와 영 제15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의 업무 2.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2009. 4. 6)	제6조	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업무 2. 법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3.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0. 4. 15)	제7조	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도서관시행계획 수립 · 추진 2. 법 제23조와 영 제15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	■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2011. 7. 8)	제6조	1. 법 제23조와 영 제15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의 업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1. 10. 20)	제6조	1.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업무 2. 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지역대표도서관 업무 3.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보존 및 제공업무	■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12. 2. 2)	제5조 제2항	1. 법 제23조와 영 제15조 제2호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업무 3.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	■

이처럼 지역대표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를 건립·운영해야 하는 법리적 타당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모든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시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 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의 자료수집을 지원하는 한편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공동으로 보존할 서고를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방식으로 건립·운영해야 한다.

www.kci.go.kr

2. 국가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2008년 8월에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2009-2013』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성격은 법정계획인 동시에 지침계획이며 8대 정책영역, 29개 정책과제, 71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세부 정책과제인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및 인력 확보' 아래의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추진전략을 보면 〈그림 2〉와 같이 2013년까지 매년 500만권을 추가하여 인구 1인당 1.6권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IFLA/UNESCO의 최저 기준인 1.5~2.5권을 유지할 계획이다.[7] 그리고 2014년부터 적용되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장서확충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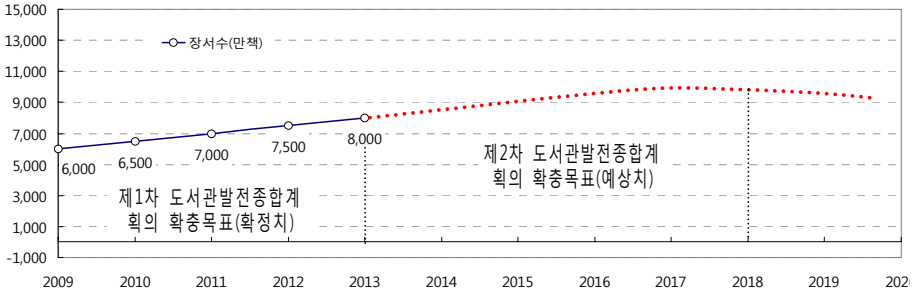

〈그림 3〉 정부의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계획과 미래 예측

이처럼 공공도서관 장서가 빠른 속도로 확충될 경우에 수장공간 부족현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정책과제인 '지역의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에서는 추진전략의 하나로 '지역대표도서관의 통합자료보존관 건립 추진'을 명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표 4〉와 같다.[8] 따라서 정부 종합계획은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관한 정책적 타당성을 정당화한다.

〈표 4〉 도서관발전종합계획상의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근거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전략
1.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1.2. 지역의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1.2.1.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체계 수립	■ 지역대표도서관의 통합자료보존관 건립 추진 – 지역의 문화·예술·역사 관련 희귀본 등 보존가치가 있는 서적·자료를 통합 보관 – 자료수장능력 및 자료증가량 등을 종합 분석하여 문헌의 공동보존을 위한 자료보존관 건립

7)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2009-2013(서울 : 동위원회, 2008), p.68.
8) 상게서, pp.55-56.

www.kci.go.kr

3. 도서관계의 인식적 타당성 분석

모든 시도에서 공공도서관 수장공간의 부족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는 여러 조사결과는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대한 도서관계의 인식적 타당성을 대변한다.

우선 2004년도 전국 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 추진실적과 2005년 추진계획을 간추린 〈표 5〉[9]를 보면 '서고설치를 위한 법령제정, 자료 이관기준 마련, 예산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대표도서관 산하 또는 별동건물 형태의 공동보존관 설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4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정보과가 『국립중앙도서관 2010』 사업의 일환인 '권역별 공동자료보존관 건립'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국내도서관 자료보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2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보존환경이 좋지 않은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소장공간 부족이 13개관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보존정책 부재로 6개관, 보존환경 미비와 교육·인식 부재가 각각 1개관으로 나타났다. 자료공동보존에 대해서는 〈그림 4〉처럼 84.4%(27개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10]

〈표 5〉 전국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자료공동보존 추진 및 계획(2004~2005)

시도	2004년 추진실적 (공동보존을 위한 필요여건)	2005년도 추진계획 (공동보존계획)
서울	· 지역대표관내 보존서고 설치예산 지원	–
부산	–	· 필요성 제기, 예산확보 문제
대구	· 자료보존관의 자료관리, 열람, 대출, 반납기능수행 (협력망사업 연계)	· 공동보존도서관 건립 모색(연건평 5,000㎡, 150만권 수용)
대전	· 지역대표관내 보존서고 설치 예산지원	–
울산	· 지역대표관내 공동보존 예산지원 및 법령제정	· 공동보존 시설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
경기	· 공동보존서고 설치 법제화 ·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설치기준 마련	· 권역별내 도서관 자료공동보존 방안 협의 추진
충북	–	· 보존서고 설치방안 강구
충남	· 공동보존서고 설치 · 신설도서관에 보존시설 갖추도록 법령 개정	· 연기도서관 보존서고 이전 계획
전남	–	·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자료 이관기준 마련 시급
경북	· 지역대표관에 보존서고 건립, 폐교 보존서고 활용	–

또한 2008년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협력망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총 900명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자체보존의 문제점을 설문조사한 결과, 예산·부지·시설·담당인력의 부족이

9) 국립중앙도서관, 2005년도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 공공도서관(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5), pp.167-168.
10) 국립중앙도서관, 국내도서관 자료보존현황 및 공동보존 구축방안 : 2006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세미나 자료집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p.127.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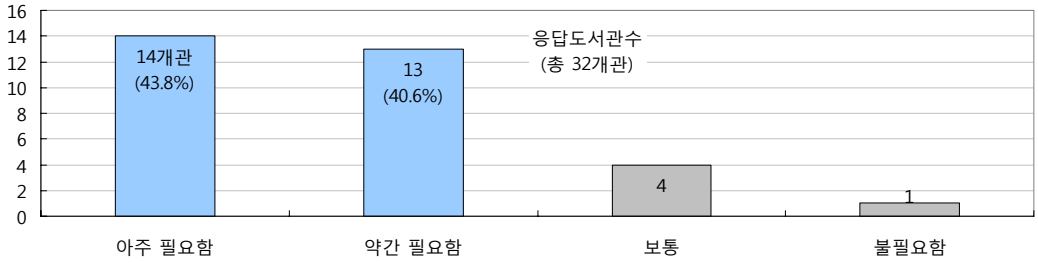

<그림 4> 자료공동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31.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초과장서 보존으로 인한 열람봉사 한계(16.2%), 복본으로 인한 공간부족(15.4%), 자료의 가치와 상관없는 보존(14.8%), 폐기·제적기준 및 범위 제한(13.3%), 귀중본 손실우려(3.1%), 기타(0.9%, 상위계층의 인식부족과 보존서고 자체가 지하에 있어 자료훼손 위험이 높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공동보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림 5〉처럼 자체보존용 예산·부지·시설·담당인력 확보(27.4%), 공동보존서고 건립(22.8%), 관종별·규모별 폐기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18.2%), 지역대표도서관 보존수행 기능(14.0%), 공동보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홍보(11.8%)의 순으로 높았다.[11] 따라서 공동보존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역대표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보존은 전체의 48.6%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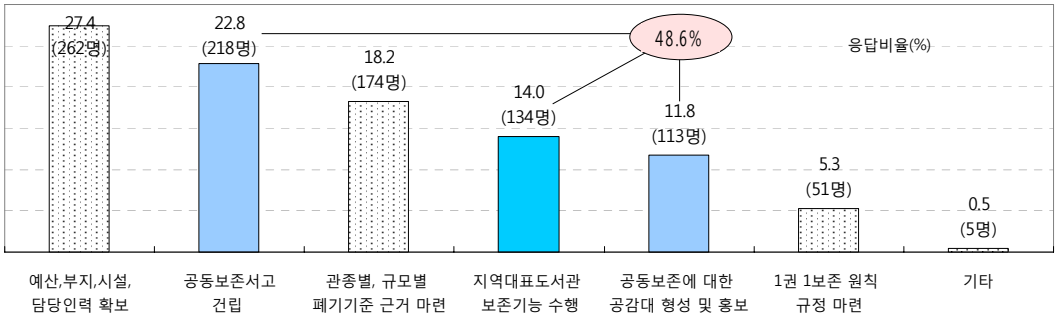

<그림 5> 공공도서관 공동보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

그 외에도 2011년에 신지연 등이 지역대표도서관 사서(52명)를 대상으로 '보존서고 공간의 충분성'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부족하다는 응답이 24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보통(22명), 부족하지 않다(7명)의 순이었다. 서고의 적체현상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도는 공동보존(33.6%), 폐기(26.4%), 신축과 증축(18.4%), 디지털화(17.6%), 지역사회 건물로의 이관(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12]

1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협력망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8), p.183.
12) 신지연, 김유승, 전게논문, p.142.

www.kci.go.kr

4. 수장공간의 실증적 타당성 분석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은 법리적, 정책적, 인식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장공간 부족현상이 심각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연면적, 자료수장공간, 소장책수와 연차증가율, 한계수장률 등에 근거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6〉 시도별 공공도서관 연면적 및 장서현황(2010년말 기준, 소숫점 이하 절상)

시 도	관할 주체	도서관수		건 물		장 서	
		개수	소계	연면적(㎡)	소계	소장책수(권)	소계
서 울	자치단체	75	97	117,100	224,642	3,434,405	8,094,042
	교육청	22		107,542		4,659,637	
부 산	자치단체	15	29	45,147	94,214	1,201,560	3,497,322
	교육청	14		49,067		2,295,762	
대 구	자치단체	9	21	15,772	67,107	373,725	2,641,054
	교육청	12		51,335		2,267,329	
인 천	자치단체	21	26	50,222	74,014	1,286,827	2,396,288
	교육청	5		23,792		1,109,461	
광 주	자치단체	11	16	32,304	53,055	919,011	1,794,391
	교육청	5		20,751		875,380	
대 전	자치단체	20	22	61,132	67,502	1,744,878	2,033,139
	교육청	2		6,370		288,261	
울 산	자치단체	7	11	8,727	23,796	304,516	1,090,762
	교육청	4		15,070		786,246	
경 기	자치단체	146	157	517,383	554,345	15,704,784	17,813,970
	교육청	11		36,962		2,109,186	
강 원	자치단체	24	46	38,031	92,820	1,583,501	3,727,511
	교육청	22		54,789		2,144,010	
충 북	자치단체	17	32	33,727	74,589	1,111,380	2,299,616
	교육청	15		40,862		1,188,236	
충 남	자치단체	31	51	58,573	107,229	1,974,506	3,643,308
	교육청	20		48,656		1,668,802	
전 북	자치단체	26	44	54,136	90,964	1,952,625	3,059,290
	교육청	18		36,828		1,106,665	
전 남	자치단체	36	57	65,002	107,870	2,452,276	4,204,686
	교육청	21		42,868		1,752,410	
경 북	자치단체	29	57	68,349	116,666	1,988,585	4,323,385
	교육청	28		48,317		2,334,800	
경 남	자치단체	29	53	88,909	136,508	2,431,681	4,714,109
	교육청	24		47,599		2,282,428	
제 주	자치단체	15	21	34,396	46,559	1,091,582	1,771,212
	교육청	6		12,163		679,630	
계	–	–	740	–	1,931,880	–	67,104,085
평균	–	–		–	2,610	–	90,681

www.kci.go.kr

첫째, 2010년말을 기준으로 16개 광역시도에 존재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분관 포함)의 연면적을 분석하면 〈표 6〉과 같이 총 1,931,880㎡이며, 1개관당 연면적 평균은 2,610㎡이다. 이를 관할주체별로 살펴보면 1개관당 평균 면적은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2,808㎡)이 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2,522㎡)보다 넓다.

둘째, 시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의 소장책수를 분석·비교하면 총 67,104,085권이며, 1개관당 평균 소장책수는 90,681권이다. 이를 관할주체로 비교하면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120,298권)이 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77,409권)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시도별 전체 평균은 대구, 부산, 경기, 광주, 울산의 순으로 많다.

셋째, 최근 10년간(2000~2010) 공립 공공도서관의 연도별 총장서수, 연간 증가책수, 장서증가지수, 연차증가율을 집계하면 〈표 7〉과 같다.[13] 2000년에 총 25,163,436권이던 장서가 2010년에는 67,104,085권으로 증가함으로써 배증하는데 7년이 소요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2007년을 제외하면 매년 10% 내외로 증가한 가운데 연평균이 10.4%(4,232,416권)로 일반적 수준인 5~6%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장서확충에 주력하였다. 2000년을 100으로 삼을 경우에 2010년 지수는 266.7에 달하였다.

〈표 7〉 연도별 공공도서관 장서증가율 및 증가지수(2000~2010)

구 분	장서수 (권)	연간 증가책수	연차 증가율 (%)	공공도서관의 연간 장서증가지수
2000	25,163,436	-	-	100.0
2001	26,971,393	1,807,957	7.2	107.2
2002	30,970,151	3,998,758	14.8	123.1
2003	34,467,396	3,497,245	11.3	137.0
2004	38,423,789	3,956,393	11.5	152.7
2005	42,474,052	4,050,293	10.5	168.8
2006	49,343,467	6,869,385	16.2	196.1
2007	50,177,978	834,511	1.7	199.4
2008	55,227,083	5,049,105	10.1	219.5
2009	62,561,632	7,334,549	13.3	248.6
2010	67,104,085	4,542,453	7.3	266.7
평 균	-	41,940,649	1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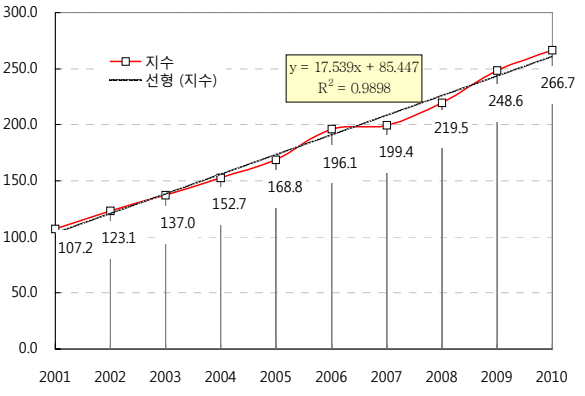

1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동협회, 2011), pp.434-435.

www.kci.go.kr

넷째, 최근 10년간(2000~2010) 공공도서관 총장서의 연평균 증가율(평균 10.4%)을 10%로 하향조정하여 향후 10년간(2011~2020) 장서증가량을 시도별로 예측하면 〈표 8〉과 같이 2020년에는 무려 254%가 증가한 약 174,051,000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시도별 및 연도별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표 8〉 시도별 및 연도별 공공도서관 장서증가량 예측(2011~2020)

시 도	장서수 (2010년 기준)	향후 10년간 장서증가량(소장책수) 예측 (단위 1,000권)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 울	8,094,042	8,904	9,794	10,773	11,850	13,035	14,339	15,773	17,350	19,085	20,994
부 산	3,497,322	3,847	4,232	4,655	5,121	5,633	6,196	6,816	7,498	8,248	9,073
대 구	2,641,054	2,905	3,196	3,516	3,868	4,255	4,681	5,149	5,664	6,230	6,853
인 천	2,396,288	2,636	2,900	3,190	3,509	3,860	4,246	4,671	5,138	5,652	6,217
광 주	1,794,391	1,973	2,170	2,387	2,626	2,889	3,178	3,496	3,846	4,231	4,654
대 전	2,033,139	2,236	2,460	2,706	2,977	3,274	3,601	3,961	4,357	4,793	5,272
울 산	1,090,762	1,199	1,319	1,451	1,596	1,756	1,932	2,125	2,338	2,572	2,829
경 기	17,813,970	19,595	21,555	23,710	26,081	28,689	31,558	34,714	38,185	42,004	46,204
강 원	3,727,511	4,101	4,511	4,962	5,458	6,004	6,604	7,264	7,990	8,789	9,668
충 북	2,299,616	2,530	2,783	3,061	3,367	3,704	4,074	4,481	4,929	5,422	5,964
충 남	3,643,308	4,007	4,408	4,849	5,334	5,867	6,454	7,099	7,809	8,590	9,449
전 북	3,059,290	3,365	3,701	4,071	4,478	4,926	5,419	5,961	6,557	7,213	7,934
전 남	4,204,686	4,626	5,089	5,598	6,158	6,774	7,451	8,196	9,016	9,918	10,910
경 북	4,323,385	4,755	5,231	5,754	6,329	6,962	7,658	8,424	9,266	10,193	11,212
경 남	4,714,109	5,185	5,704	6,274	6,901	7,591	8,350	9,185	10,103	11,113	12,224
제 주	1,771,212	1,948	2,143	2,357	2,593	2,852	3,137	3,451	3,796	4,176	4,594
계	67,104,085	73,812	81,196	89,314	98,246	108,071	118,878	130,766	143,842	158,229	174,051

다섯째, 2010년말을 기준으로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연면적, 소장책수, 연차증가율, 향후 연도별 장서증가 추계, 한계수장률 등을 조합하면 수장공간의 부족여부를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주요 논거와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자료공간의 적정 기준 :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14]은 공공도서관 내부공간을 자료공간, 이용자공간, 직원공간, 공유공간으로 구분하고 자료공간을 연면적의 45%(중앙관)~40%(분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이용공간(수유실, 어린이실, 장애인실, 세미나 및 회의실, 문화프로그램 수강실 등)의 수용으로 자료공간의 상대적 축소가 불가피 하므로 약 30% 내외가 적당하다.

14)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편,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서울 : 동협회, 2013), p.42.

www.kci.go.kr

② 자료공간의 운영방식 : 대다수 공공도서관의 자료실은 개가제로 운영하는 가운데 이용도가 극히 낮은 자료나 복본 등을 폐가제 보존서고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공간의 운영방식은 전체장서의 70%를 개가제로, 나머지 30%를 폐가제로 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가제 : 폐가제 = 7 : 3'을 적용한다.

③ 서가당 점유면적과 수장기준 : 개가제 자료실의 서가 1개당 점유면적의 보편적 기준은 5.3㎡, 보존서고는 3.71㎡이다[15]. 그리고 개가제 자료실의 표준서가(2련 6단 양면 서가) 1개당 한계수장책수는 일반도서(제본된 잡지 및 학위논문 포함)를 기준으로 최대 600권이고, 폐가제 보존서고의 표준서가(2련 7단 양면서가) 1개당 최대 수장책수는 700권이다. 따라서 자료공간 1㎡당 개가제 자료실은 113권, 폐가제 보존서고는 189권을 적정 수장기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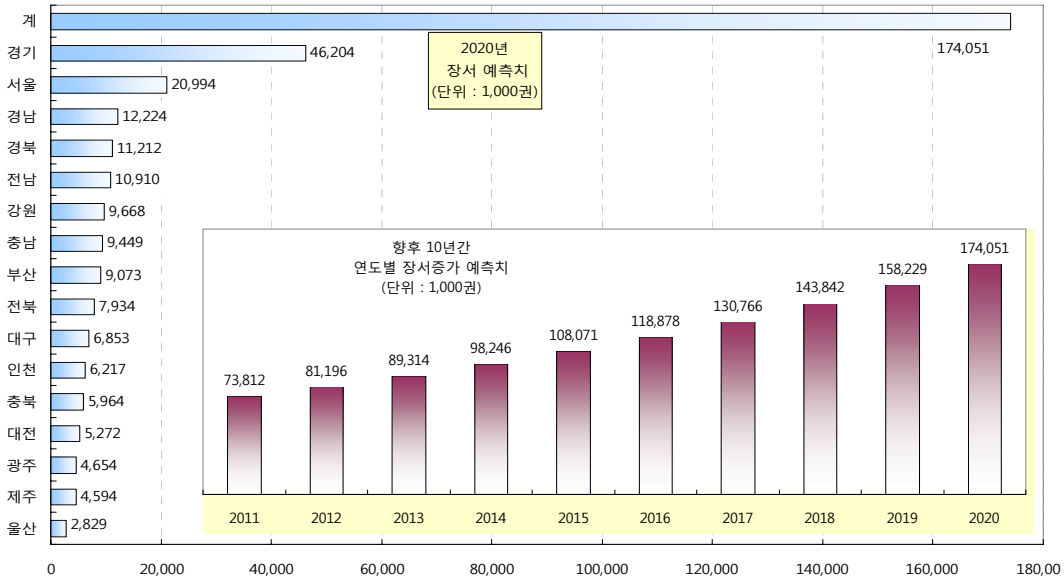

<그림 6> 시도별 및 연도별 공공도서관 장서증가 예측치(2011~2020)

④ 한계수장률 : 표준서가 1련의 폭은 91.4cm(36인치)이고 각 단에 평균 12.7cm(5인치)의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신착도서 배가에 따른 자료이동의 도미노 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서가의 한계점유율은 86%[(91.4cm - 12.7cm) ÷ 91.4cm × 100]가 된다. 따라서 서가에 자료가 86% 수장될 때를 한계수장율로 간주한다.[16] 이를 기준으로 신축 및 증개축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완공하는데 통상 2~3년이 걸리므로 그에 따른 자료의 포화상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2010년말 현재의 공공도서관 연면적과 적정 수장공간, 한계수장책수,

15) 윤희윤, 대학도서관경영론, 완전개정 3판(대구 : 태일사, 2013), p.307.
16) 상게서, p.294.

www.kci.go.kr

그리고 〈표 8〉의 장서증가 예측치를 조합하여 각 시도의 연도별 수장공간 부족률을 분석하면 〈표 9〉 및 〈그림 7〉과 같다. 이미 6개 시도(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남, 제주)는 한계수장률에 도달한 상태이며, 전체 공공도서관의 연도별 수장공간 부족률을 추계한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부터는 모든 시도가 수장공간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시도별 수장공간의 현실적 부족현상은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논거가 된다.

〈표 9〉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 분석(2011~2020)

시 도	건물 연면적 (㎡)	적정 수장공간[1] (㎡)	한계 수장책수[2] (권)	연도별 장서증가량 대비 수장공간 부족률(%)[3]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 울	244,642	73,393	9,966,777	+10.7	+1.7	−8.1	−18.9	−30.8	−43.9	−58.3	−74.1	−91.5	−110.6
부 산	94,214	28,264	3,838,236	−0.2	−10.5	−21.3	−33.4	−46.8	−61.4	−77.6	−95.4	−114.9	−136.4
대 구	167,107	20,132	2,733,956	−6.3	−11.9	−28.6	−41.5	−55.6	−71.2	−88.3	−107.2	−127.9	−150.7
인 천	74,014	22,204	3,015,288	+12.6	+3.8	−5.8	−16.4	−28.0	−40.8	−54.9	−70.4	−87.4	−106.2
광 주	53,055	15,917	2,161,521	+8.7	−0.4	−10.4	−21.5	−33.4	−47.0	−61.7	−77.9	−95.7	−115.3
대 전	67,502	20,251	2,750,063	+18.6	+10.5	+1.6	−8.3	−19.1	−30.9	−44.0	−58.5	−74.3	−91.2
울 산	23,796	7,139	969,499	−23.7	−36.0	−49.7	−64.6	−81.1	−99.3	−119.2	−141.1	−165.3	−191.8
경 기	554,345	166,304	22,584,068	+13.2	+4.6	−5.0	−15.5	−27.0	−39.7	−53.7	−69.1	−86.0	−104.6
강 원	92,820	27,846	3,781,502	−8.4	−19.3	−31.2	−44.3	−58.8	−74.6	−92.1	−111.3	−132.4	−155.7
충 북	74,589	22,377	3,038,789	+16.7	+8.4	−0.7	−10.8	−21.9	−34.1	−47.5	−62.2	−78.4	−96.3
충 남	107,229	32,169	4,368,573	+8.3	−0.9	−11.0	−22.1	−34.3	−47.7	−62.5	−78.8	−96.6	−116.3
전 북	90,964	27,289	3,702,089	+9.1	+0.1	−10.0	−21.0	−33.1	−46.4	−61.0	−77.1	−94.8	−114.3
전 남	107,870	32,361	4,394,601	−5.3	−15.8	−27.4	−40.1	−54.1	−69.5	−86.5	−105.2	−125.7	−148.3
경 북	116,666	35,000	4,753,000	0.0	−10.1	−21.1	−33.2	−46.5	−61.1	−77.3	−95.0	−114.5	−135.9
경 남	136,508	40,952	5,561,312	+6.8	−2.6	−12.8	−24.1	−36.5	−50.1	−65.2	−81.7	−99.8	−119.8
제 주	46,559	13,968	1,896,824	−2.7	−13.0	−24.3	−36.7	−50.3	−65.4	−81.9	−100.1	−120.1	−142.2
계	2,051,880	585,566	79,516,098	+7.2	−2.1	−12.3	−23.6	−41.1	−55.2	−64.5	−80.9	−99.1	−118.9

1) 적정 수장공간은 도서관 연면적의 30%를 적용함

2) 예컨대 서울시의 적정 수장공간인 73,393㎡에 개가제:폐가제=7:3을 적용하면 개가제 수장공간은 51,375㎡(73,393㎡×0.7), 폐가제 서고공간은 22,018㎡(73,393㎡×0.3)이다. 한계수장률을 85%로 설정할 경우에 개가서고의 표준서가(2련 6단 양면 서가)당 수장책수는 약 600권, 서가당 바닥면적은 5.3㎡이므로 1㎡당 113권(600권÷5.3㎡)을 수장할 수 있고 폐가서고의 표준서가(2련 7단 양면 서가)당 수장책수는 약 700권, 서가당 바닥면적이 3.7㎡이므로 1㎡당 189권(700권÷3.7㎡)을 수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개가서고의 수장책수 5,805,375권(51,375㎡×113권)과 폐가서고의 수장책수 4,161,402(22,018㎡×189권)을 합하면 한계수장책수는 9,966,777권이다.

3) 연도별 장서증가량 대비 수장공간 부족률(%)의 산출방식은 가령 서울시 2011년도의 경우, <표 8> 시도별 공공도서관 장서의 연도별 증가량 예측에서 8,904,000권이므로 이를 한계수장책수인 9,966,777권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89.3%가 되는데 이것은 연면적 중에서 적정 수장공간(30%)의 한계수장책수보다 적으므로 약 10.7%(100%−89.3%)가 여유공간이 된다. 따라서 서울시의 2011년도 수장공간은 장서증가량과 한계수장책수를 대비할 때 약 10.7% 여유가 있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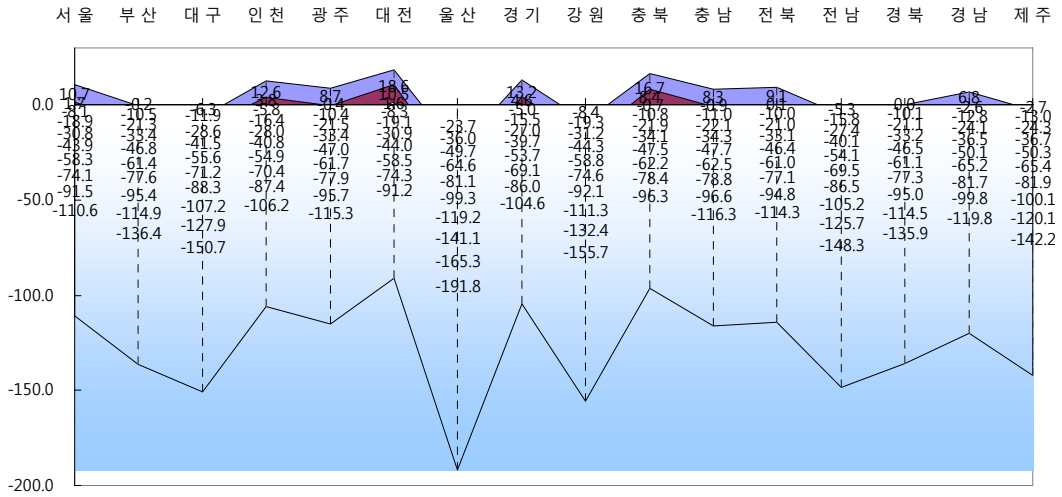

〈그림 7〉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 추계(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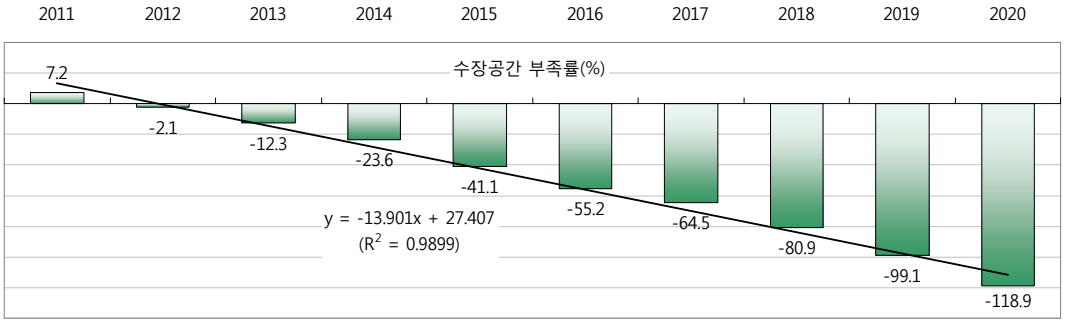

〈그림 8〉 연도별 공공도서관 전체의 수장공간 부족률 추계(2011～2020)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법리적, 정책적, 인식적, 실증적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충분하다. 최근에 네그로폰테(N. Negroponte)를 비롯한 디지털 예찬론자들이 종이책의 사멸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시장에서 전자책이 종이책의 대체재로 인식되거나 지구촌에 유통되는 모든 종이책이 공룡처럼 일순간에 사라지지 않는 한 지난 2천년간 철옹성을 구축한 인쇄자료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공도서관도 인쇄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보존하기 위한 공간확충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될 때 공동보존서고가 중요하고 지역단위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

www.kci.go.kr

Ⅳ. 결론 및 제언

지난 60년간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장서확충정책을 구사하여 왔다. 그에 따른 수장공간 부족이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지역대표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하여 수장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관계법령, 국가정책, 도서관계 인식도, 실제 수장공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법령(도서관법, 자치조례)의 법리적 측면에서는 「도서관법」 제23조 제4호가 '· · ·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을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로, 「도서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가 '· · ·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할 지역대표도서관장의 업무로 규정하였고, 13개 시도의 지역대표도서관 관련조례도 지역단위 공동보존의 책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건립의 타당성은 명확하고 충분하다.

둘째,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법정계획인 동시에 지침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정책과제 가운데 '지역의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을 전략의 하나로 '지역대표도서관의 통합자료보존관 건립 추진'을 제시하고 있어 건립의 타당성을 정당화한다.

셋째, 도서관계의 인식적 측면에서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연도별 공동보존 추진실적과 계획, 권역별 공동자료보존관 건립에 관한 기초조사, 자료보존 실태조사 등에서 건립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부족함이 없다.

넷째, 수장공간의 실증적 분석에서는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연면적, 적정 수장공간, 소장책수, 연차증가율, 한계수장책수, 미래 장서증가 예측치 등을 조합·분석한 결과, 대다수 시도가 한계수장률에 도달하였고 2014년부터 모든 시도가 수장공간 부족에 직면하므로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지역사회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도서관의 배타적 정체성은 체계적인 장서개발, 누적성과 역사성을 겸비한 장서구축 및 보존관리에서 발원한다. 그럼에도 수장공간의 부족이 장서보존을 어렵게 하고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하므로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운영모형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하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시도의 문화정책은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국내도서관 자료보존현황 및 공동보존 구축방안 : 2006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 세미나 자료집.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협력망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8.

국립중앙도서관. 2005년도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 공공도서관.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5.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2009-2013. 서울 : 동위원회, 2008.

신지연, 김유승.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3호(2011. 9), pp.129~150.

윤희윤. 대학도서관경영론, 완전개정 제3판. 대구 : 태일사, 2013.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편.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 동협회, 2013.

Henden, Johan. "The Norwegian Repository Library." *Library Management*, Vol.26, No.1/2 (2005), pp.73-78.

Murray-Rust, Catherine. "Library Storage as a Preservation Strategy."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27(2010), pp.159-183.

Payne, Lizanne. *Library Storage Facilities and the Future of Print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Dublin : OCLC, 2007.

Seaman, Scott. "Collaborative Collection Management in a High-density Storage Facilit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66, No.1(Jan. 2005), pp.20-27.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Regional Depository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 A Time for Change? : A Report to the Joint Committee on Printing*. Washington, D.C. : The Office, 2008.

Yoon, Hee-Yoon, Kim Sin Young, and Oh Sun-Kyung. "Shortage of Storage Space in Korean Libraries : Solutions Centering upon Hub-based Collaborative Repositories." *Aslib Proceedings*, Vol.60, No.3(2008), pp.265-282.

www.kci.go.kr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n Library Standards*. Seoul : The Association, 2013.

President's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Library Master Plan : 2009-2013*. Seoul : The Committee, 2008.

Shin, Ji-Yeon & Kim, You-Seung.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for the Cooperative Repositoiy Libraries Based on Regional Centr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2, No.3(2011), pp.129-150.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ooperative Preservation of Library Collection in Korea." *2006 Open Policy Seminar*. Seoul : The Library, 2006.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 Study on the Operation Realities of Library Cooperation Network*. Seoul : The Library, 2008.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5 Kit : Operation Realities of Public Library Cooperation Network*. Seoul : The Library, 2005.

Yoon, Hee-Yoon. *Academic Library Management*, 3rd ed. Daegu : Taeil Publishing, 2013.

www.kci.go.kr